

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학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38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9. 30.

발 의 자 : 이학영 · 최혁진 · 이정문
김주영 · 김기표 · 정태호
박희승 · 한민수 · 한정애
박 정 · 김남희 · 박민규
김영호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물 부족 문제는 잦은 가뭄, 지역 간 물 자원의 불균형 및 첨단산업 단지 구성에 따른 공업용수 수요의 급증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나, 기존 수원은 한정되어 있어 안정적인 물 공급 체계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.

현재 재이용수 공급은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추진되고 있어, 공급 범위가 관할 구역 내 수요처에 제한되며, 이로 인해 지역 간 재이용수 이송과 같은 광역적 공급에는 한계가 존재함.

또한 재이용수를 공업용수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요하나, 민간투자 방식에 의존하는 현 구조는 수익성이 낮은 지역에 대한 투자 유인을 부족하게 하여 원활한 공급을 저해하고 있음.

이에 국가가 직접 하·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이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, 지역 간 효율적인

물 분배를 가능하게 하며, 극한 가뭄 등 물 부족 상황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10조제4항 및 제10조의2 신설 등).

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환경부장관은 물의 재이용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재이용하거나 공급하고 남은 하수처리수를 관할 지역 외의 하·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에 공급하도록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공급 요청을 받은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2(국가의 하·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) ① 환경부장관은 지역별 물 수요량 및 공급 가능량, 가뭄 발생 전망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하·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-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하·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 수립된 설치계획을 변경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하·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하·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제11조제1항 전단 중 “공공하수도관리청 외에”를 “환경부장관 및 공공하수도관리청 외에”로 한다.

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경우 또는”을 “경우, 제10조의2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하·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·변경하는 경우 또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설치승인 또는”을 “설치승인(제10조의2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하·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 또는”으로 한다.

제13조제1항 중 “제10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”를 “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 및 환경부장관[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하·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(이하 “하·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대행기관”이라 한다)을 포함한다]이”로 한다.

제14조제1항 중 “공공하수도관리청”을 “환경부장관(하·폐수처리수 재

이용사업 대행기관을 포함한다), 공공하수도관리청”으로, “하고”를 “하
여야 하고, 하·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대행기관, 공공하수도관리청,
하·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는”으로 하고,
같은 조 제3항 중 “공공하수도관리청”을 “환경부장관(하·폐수처리수
이용사업 대행기관을 포함한다), 공공하수도관리청”으로 한다.

제15조제1항 본문 중 “공공하수도관리청”을 “환경부장관(하·폐수처리
수 이용사업 대행기관을 포함한다), 공공하수도관리청”으로 한다.

제16조 중 “공공하수도관리청”을 “환경부장관, 공공하수도관리청”으로
한다.

제21조 본문 중 “공공하수도관리청”을 “환경부장관, 공공하수도관리
청”으로 한다.

제2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8호 중 “공공하수도관리청”을 각
각 “하·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대행기관, 공공하수도관리청”으로 한
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0조(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·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) ① ~ ③ (생략) <u><신설></u>	제10조(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·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<u>환경부장관은 물의 재이용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재이용하거나 공급하고 남은 하수처리수를 관할 지역 외의 하·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에 공급하도록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공급 요청을 받은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</u> 제10조의2(국가의 하·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) ① <u>환경부장관은 지역별 물 수요량 및 공급 가능량, 가뭄 발생 전망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하·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.</u> ② <u>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</u>

	<u>하·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 수립된 설치계획을 변경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</u> <u>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하·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</u> <u>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하·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.</u>
제11조(하·폐수처리수 재이용사	제11조(하·폐수처리수 재이용사

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
가) ① 공공하수도관리청 외에
하·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
하려는 자와 온배수 재이용사
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
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
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인
가를 받아야 한다. 인가받은 사
항을 변경(환경부령으로 정하
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
우는 제외한다)하려는 경우에
도 또한 같다.

②·③ (생략)

제12조(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
등의 의제) ① 제10조에 따라
공공하수도관리청이 설치승인
을 받은 경우 또는 제11조에
따라 하·폐수처리수 재이용사
업을 하려는 자가 인가를 받은
경우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
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
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
호의 허가·면허·승인·해제
·심사를 받거나 협의·신고를
한 것으로 본다.

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
가) ① 환경부장관 및 공공하
수도관리청 외에-----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12조(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
등의 의제) ① -----

-----경우, 제10조의2에 따라
환경부장관이 하·폐수처리수
재이용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
· 변경하는 경우 또는-----

1. ~ 11. (생 략)

② 환경부장관은 설치승인 또는 하·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인가를 할 때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,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(생 략)

제13조(하·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등) ① 제10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하·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제11조에 따라 하·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인가를 받은 자(이하 “하·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”라 한다)가 하·

1. ~ 11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설치승인(제10조의2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하·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 또는-----

③ (현행과 같음)

제13조(하·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등) ①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 및 환경부장관[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하·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(이하 “하·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

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를 받은 자(이하 “온배수 재이용사업자”라 한다)가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하·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 설계·시공업자에게 설계·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·③ (생략)

제14조(하·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수질)

① 공공하수도관리청, 하·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는 하·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이 완공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·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수질검사를 하
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

대행기관”이라 한다)을 포함한다]이-----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14조(하·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수질)

① 환경부장관(하·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대행기관을 포함한다), 공공하수도관리청-----

보고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③ 공공하수도관리청, 하·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에 맞게 하·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를 공급하여야 한다.

제15조(하·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관리) ① 공공하수도관리청, 하·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는 기술관리인을 두어 하·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유지·관리하여야 한다. 다만, 하·폐수처리수 재이용시

-----하여야
하고, 하·폐수처리수 재이용사
업 대행기관, 공공하수도관리
청, 하·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
자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는-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환경부장관(하·폐수처리수
이용사업 대행기관을 포함하
다), 공공하수도관리청-----

제15조(하·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관리) ① 환경부장관(하·폐수처리수 이용사업 대행기관을 포함한다), 공공하수도관리청----

설등 설계·시공업자에게 하·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또는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(생략)

제16조(하·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보호) 누구든지 공공하수도관리청, 하·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의 사전 동의 없이 하·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관로 및 온배수 재처리수 관로로부터 분기(分岐)하여 하·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를 이용하거나 하·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변조(變造) 또는 파손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21조(하·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) 하·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하는 공공하수도관리청 및 하·폐수처리수 재이

-----.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6조(하·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보호) -----환경부장관, 공공하수도관리청-----

-----.

제21조(하·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) -----

-----환경부장관, 공공하수도관리청-----

용사업자는 하·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받을 수 있다. 다만, 공공하수도관리청 및 하·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받을 수 있다.

제28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· 2. (생략)

3. 제13조에 따른 설치기준 등을 위반하여 하·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또는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한 공공하수도 관리청, 하·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

4. 5. (생략)

② (생략)
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

제28조(과태료) ①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

-----하 · 폐수처리
수 재이용사업 대행기관, 공
공하수도관리청-----

4.·5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_____

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1. ~ 7. (생 략) 8.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 사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<u>공공하수도관리청</u>, 하·폐수 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 배수 재이용사업자 ④·⑤ (생 략)	-----. 1. ~ 7. (현행과 같음) 8. ----- -----하 · 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대 <u>행기관, 공공하수도관리청</u>--- ----- ----- ④·⑤ (현행과 같음)
---	---